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21
----------	-----

2011년 2월 24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1년 1월 31일, 서울특별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11년 2월 8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2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1년 2월 24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문화관광기획관 안승일)

가. 제안이유

- 국립·공립·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을 지원·육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진흥을 도모하고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시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시민의 문화향유 증진을 위하여 서울시 관내의 박물관 및 미술관을 지원·육성함(안 제4조 및 제5조).
-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 관련 법인·단체에 대하여 전시 운영비, 인건비 등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함.
-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진흥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비상설로 설치·운영함(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 위원회 기능,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김동수)

- 동 제정조례안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내에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서울특별시 관내 등록 박물관 및 미술관은 총 139개(박물관 105, 미술관 43)로써 국·공립과 사립으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동법 제24조제1항을 근거로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에도 전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해 오고 있음.
- 동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서울시 관내 등록박물관 및 미술관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둘째, 시장이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진흥을 위하여 “박물관·미술관 진흥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임.
- 이는 서울시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과 미술관의 진흥을 위하여 일부예산을 지원하고, 이를 위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므로 이미 관련법에 따라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조례로 명문화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다만 현재는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에 전시 및 프로그램 운영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지만 동 제정조례안 제4조에는 전문인력에 대한 인건비 등 운영에 관한 포괄적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예산의 증액은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됨.
- 등록 박물관과 달리 34곳의 등록 미술관 중 23곳은 공공기관이나 문화사업을 통하여 세제혜택을 받는 기업의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그룹회장의 직계가족들이 운영을 맡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위한 인건비와 운영경비를 서울시의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시민들의 공감을 얻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
- 또한 관련법에서 박물관과 미술관을 함께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조례에서도 동일하게 규정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으나 “박물관”과 “미술관”은 그 기능과 역할이 다르고, 박물관의 운영자는 개인이 많은 반면, 미술관은 기업의 재단에서 운영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이를 지원·육성하기 위한 제도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 동 조례안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4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한 지원 외에도 안 제4조제2항을 통하여 “관련법인·단체”에 대한 운영비 및 전문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의 범위를 확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관련 협회나 단체 등에 대한 지원이 궁극적으로 박물관과 미술관에 대한 지원과 연계성은 있다고 할지라도 법 규정을 확대해석하여 조례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함.

- “사립미술관협회”에 대한 지원은 서울시와 서울문화재단이 모두 지원하여 온 바, 서울시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한 지원만을 담당하도록 하고 이러한 관련단체 및 협회에 대한 지원은 심사를 통해 서울문화재단이 지원을 하도록 이원화하기 위해서는 동 조례안 제4조제2항은 삭제할 필요가 있음.
- 전반적으로 서울특별시 관내 등록박물관 및 미술관 139개관 중 매년 박물관 20여 개관과 미술관 10여 개관이 서울시로부터 1~2천만원을 지원받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경우, 사립박물관과 미술관 대상으로 노동부에서 시작한 해설사지원사업(연간 3~4억원 규모, 현재 토토복권기금에서 지원), 청년인턴지원사업, 특별전시지원프로그램(복권기금으로 연간 6~8억원 규모), 사랑티켓지원사업(연간 5천만원 규모),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사업으로 전국적으로 99개관의 사립박물관과 미술관에 대한 학예인력지원사업(2011년 예산 17억5천2백만원, 서울시 소재 박물관 26개관과 미술관 4개관이 지원 받음) 등이 있는 바, 동 제정조례안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원과 차별화된 지원체계의 마련이 필요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7. 수정안의 요지

- 안 제7조제1항을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로 함.
- 안 제7조제2항을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해촉한다”로 함.
- 안 제7조제2항제1호를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함.
- 안 제7조제2항제2호를 “박물관 및 미술관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함.
- 안 제8조제1항은 삭제하고,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 함.

8.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출석위원 전원 찬성)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221
----------	-----

제안년월일 : 2011년 2월 24일

제안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수정이유

- 조례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일부 조문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 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조항을 재조정하고 관련 조문을 정리함(안 제7조 ~ 제8조).

3. 참고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안 제7조제2항 본문 및 제1호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해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2. 박물관 및 미술관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안 제8조제1항은 삭제하고,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수정조문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p>제7조(위원회 구성) ① <u>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u></p> <p>② <u>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개최시마다</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해촉한다.</p> <p>1. <u>서울특별시의회에서</u> 추천하는 <u>시의회의 의원</u></p> <p>2. 박물관 및 미술관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u>풍부한 사람</u></p> <p>3. (생략)</p> <p>③ (생략)</p> <p>제8조(위원회 운영) ① <u>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u></p> <p>② 시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7일 전까지 회의와 관련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촉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제7조(위원회 구성) ① <u>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u></p> <p>② <u>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 위원은</u>.....</p> <p>.....</p> <p>1. <u>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u>.....</p> <p><u>소관 상임위원회 위원</u></p> <p>2.....</p> <p>.....<u>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u></p> <p>3. (조례안과 같음)</p> <p>③ (조례안과 같음)</p> <p>제8조(위원회 운영) ① <삭제></p> <p>① (조례안과 같음)</p> <p>② (조례안과 같음)</p>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내의 박물관 및 미술관을 지원·육성하여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시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박물관 및 미술관”이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시설을 말한다.
2. “관련 법인·단체”란 「민법」, 「상법」 및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중 박물관 및 미술관과 관련된 법인·단체를 말한다.

제3조(박물관·미술관의 육성을 위한 노력)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박물관 및 미술관의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경비지원) ①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하여, 법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중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시·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에 대한 경비
3.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보존·보관·위탁에 소요되는 경비
4. 그 밖에 시장이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관련 법인·단체에 대하여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소요되는 경비 중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경비의 관리) ① 제4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박물관 및 미술관 등은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지원목적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박물관 및 미술관 등에 대하여 지원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라 회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회수한 박물관 및 미술관 등에 대하여는 회수한 날부터 2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박물관·미술관진흥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진흥을 위하여 박물관·미술관진흥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시장이 효율적인 안전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를 박물관 분야 및 미술

관 분야로 나누어 운영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4조의 지원사업 및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및 향후 지원방향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의 박물관 및 미술관 등록과 그 취소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진흥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해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2. 박물관 및 미술관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그 밖에 박물관 및 미술관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총괄한다.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시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7일 전까지 회의와 관련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촉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를 분야별로 각 1명씩 둔다.

② 박물관 분야의 간사는 문화재과장, 미술관 분야의 간사는 문화정책과장이 되고, 서기는 각각의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